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681
----------	-------

발의연월일 : 2024. 5. 23.

발 의 자 : 이탄희 · 용혜인 · 박용진
장혜영 · 한준호 · 정필모
양이원영 · 황운하 · 강민정
전용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법원행정처는 대법관인 처장과 법관, 일반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특히 2024년 상반기 재판업무를 하지 않고 법원행정처 소속으로 배치된 법관 수가 급증한 바 있음.

그런데 최근 법원의 재판업무 증가로 재판지연이 심화되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이 제기됨. 이에 재판업무를 담당할 주체인 법관 수를 늘려야 한다는 법관증원론 등 여러 대책이 논의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재판업무를 본업으로 하는 법관 인력을 사법행정 등 비재판업무로 배치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부족한 법관 인력을 재판업무에 집중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한편, 법관을 법원행정처에 배치한 결과 조언이나 의견 제시, 충고 등의 형태로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발생하였고, 재판 독립을 위해 도입된 법관의 임기제와 연임제가 오히려 사법행정을 통해

위헌·위법행위를 한 법관에 대한 책임면탈 수단이 될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도 오랫동안 존재해 왔음(헌법재판소 2021. 10. 28. 2021헌나1 결정 등).

이에 법원행정처를 대법관인 처장 이외에는 사법행정을 주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중심으로 구성하게 함으로써, 부족한 법관 인력을 재판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여 재판지연 해소와 재판독립 강화를 꾀하고자 함(안 제68조의2 신설 등).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중 “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차장”을 “특허법원장”으로 한다.

제67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8조제2항 중 “판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한다”를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로 한다.

제6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2(법원행정처장비서관 등) ① 법원행정처에 법원행정처장비서관과 법원행정처차장비서관을 둔다.

② 법원행정처장비서관은 법원서기관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법원행정처차장비서관은 법원사무관 또는 5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71조제4항 중 “판사 또는 법원관리관”을 “법원관리관”으로, “판사·법원이사관”을 각각 “법원이사관”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보직) ① (생 락) ②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u>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차장,</u>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 법원장, 회생법원장은 15년 이 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보한다.	제44조(보직) ① (현행과 같음) ② ----- <u>특허법원장</u> ----- ----- ----- -----.
제67조(법원행정처장 등) ① ~ ④ (생 락) ⑤ <u>법원행정처에 법원행정처장</u> <u>비서관과 법원행정처차장비서</u> <u>관을 둔다.</u> ⑥ <u>법원행정처장비서관은 법원</u> <u>서기관 또는 4급 상당의 별정</u> <u>직공무원으로 보하고, 법원행정</u> <u>처차장비서관은 법원사무관 또</u> <u>는 5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u> <u>로 보한다.</u>	제67조(법원행정처장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제68조(임명) ① (생 락) ② <u>법원행정처차장은 판사 중</u> <u>에서 대법원장이 보한다.</u> <신 설>	제68조(임명) ① (현행과 같음) ② <u>법원행정처차장은 정무직으</u> <u>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u> <u>같은 금액으로 한다.</u> 제68조의2(<u>법원행정처장비서관</u>

